

「평창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안자 : 박춘희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19.
- 회부일자 : 2025. 10. 13.
- 상정일자 : 2025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평창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~ 제5조)
-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및 홍보 · 교육(안 제6조 ~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,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놀 권리(玩耍权利)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 및 안 제2조(정의)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.
- 안 제3조(군수의 책무)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사업 추진 시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

함.

- 안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및 안 제5조(실태조사)에서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(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) 및 안 제7조(홍보 및 교육)에서 관련 추진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홍보와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 놀이 환경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~ 차. (생 략)

3. ~ 7. (생 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아동복지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

제31조 1.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,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

인정한다.

2. 당사국은 문화적·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, 문화, 예술,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.